KB국민은행

『KB 국민 ONE 적금(자유적립식)』특약

제1조 적용 범위

"KB 국민 ONE 적금(자유적립식)(이하'이 적금'이라 합니다)"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제 3 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

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제 4 조 저축방법 및 저축한도

- ① 이 적금의 저축금은 초회 1만원이상 원 단위, 2회차 이후 1만원이상 원단위로 금액을 달리하여 수시로 저축할 수 있으며 월별 저축한도는 3백만원 이내로 합니다. 단, 재예치시 「KB Wise 플랜 적립이체 특약」에 의한 「KB Wise 플랜 적립이체」시, 「KB Safe 플랜 이체 특약」에 의한 「KB Safe 플랜 이체」시 에는 본문의 저축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KB Safe 플랜 이체」에 의한 저축은 1회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② 「KB Wise 플랜 적립이체 특약」에 의한 적금이체는 이 적금으로만 가능합니다.

제5조이자

- ① 이 적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이하"기본이율"이라 함)로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② 거래처가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거래처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6 조 우대이율

이 적금은 컬렉션우대, 뱅킹우대, KB 국민재형저축우대, 재예치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 단, 모든 우대이율은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분	내 용	비고
[1] 컬렉션우대	「KB 국민 ONE 통장」과 이 적금을 모두 가입 시 연 0.2%p 우대	최초 가입 후 1년간 적용
[2] 뱅킹우대	인터넷뱅킹(또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이 적금 신규 시 연 0.2%p 우대	

[3] KB 국민재형저축우대	이 적금 신규일의 전월 달 초일부터 이 적금 신규일 당일까지 KB 국민 재형저축(고정금리형 포함)을 해지한 이력이 있는 경우 연 0.3%p 우대	최초 가입 후 1년간 적용
[4] 재예치우대	재예치된 계좌에 대하여 연 0.3%p 우대	재예치계좌에 대해 적용

제 7조 적금의 운용

- ① 이 적금은 가입 시 등 재예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만기일에 제세금을 공제한 해지 원금과 이자를 제 3 조의 정기적금 초회 저축금으로 하여 1 년 단위로 4회(최초 계약기간 포함 5년)까지 자동 재예치합니다.
- ② 자동재예치시 재예치 통지를 요청한 고객에게만 고객이 신청한 방법(SMS 또는 이메일)으로 통지합니다.
- ③ 이 적금은 최초 가입후 또는 재예치후 추가 저축이 없는 계좌, 압류 등 사고신고 계좌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재예치된 계좌의 이율은 재예치된 날을 가입일로 하여 제 5 조 및 제 6 조에 따라 적용이율을 정합니다.
- ⑤ 비과세종합저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가입한 계좌가 재예치 시 고객이 지정한 비과세종합저축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재예치합니다.

제 8 조 예금의 일부인출

- ① 이 적금은 재예치된 계좌의 재예치금(이자원가액 포함) 중 해지를 포함하여 총 3회만 1만원 단위로 일부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해지 시 잔액이 최저 1백만원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 ② 재예치일부터 일부 인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셈한 이자를 일부 인출금액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9 조 해지

이 적금을 해지하기 전에 적금과 연계된 「KB Wise 플랜 적립 이체,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약관변경

본 특약의 내용은 은행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본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시행일 1 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은행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1 개월 동안 게시·안내합니다. 다만 특약 변경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 약관 시행일 1 개월 이전에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21 조 제 2 항각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립니다.

부 칙 (2012.11.26)

이 약관은 2012.11.26 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3.01.28)

이 약관은 2013.01.28 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3.07.15)

이 약관은 2013.07.15 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5.07.29)

이 약관은 2015.07.29 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5.08.31)

이 약관은 2015.08.31 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20.03.06)

이 약관은 2020.03.06부터 적용합니다.

